

일본, 특허전 발명등록제 도입

일본 정부가 특허 출원에 앞서 산업기술을 비롯한 각종 발명을 등록·증명하는 새로운 제도는 오는 2010년까지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신청한 발명을 특허청이 내용과 날짜의 증명을 통해 비공개로 보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특허출원제도와 병행해 지적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

현재 일본은 특허 출원 전의 발명을 증명·보호하는 제도가 없어 특허 침해 소송 및 사용금지처분 등을 우려한 기업들이 사전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특허 업무의 폭주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특허의 경우 출원한 지 1년 반 뒤에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독자기술이 도용당할 여지도 큰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중국, '인조달걀'까지 등장

'가짜천국' 중국에서 최근 '인조달걀'까지 등장했다. 중국 일부 도시에서 화학물질로 제조된 인조달걀이 시장 등지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은밀하게 제조방법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부 광저우 당국은 가짜 달걀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급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도시 식품안전 당국들도 시민들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하며 인조달걀 소탕에 들어갔다.

인조달걀 흰자에는 알긴산 나트륨, 백반 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노른자는 레몬색 색소를 첨가해 만들며 달걀 껍데기는 식용 파라핀과 석고가루를 섞어서 만들어 진짜와 함께 유통되고 있다.

일본 정부, 홍콩 가짜상표 실태조사

일본 정부가 진짜 뺏치는 홍콩의 가짜 상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10월까지 홍콩의 등기제도와 일본 기업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기업명 등기 실태조사를 벌여 홍콩 정부에 제도개선과 단속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지난 5월 13일 발표했다.

홍콩은 상표등록이 간단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명상표도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히타치(日立) 전기집단, 홍콩도시바(東芝) 전기, 일본마쓰시타(松下) 전기(홍콩), 홍콩산요(三洋) 국제집단' 등 일본 기업으로 생각하기 쉬운 기업 이름이 다수 등록돼 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가웃거리는 사장님들과 간부들에게 존은 계속 설명했다.

'사장님, 저는 오랫동안 배를 타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거쳐 인도양까지 항해했던 선원입니다. 배에는 늘 갖가지 물건을 가득 싣고 다니는데, 2~3개월 동안의 항해 기간에 그 물건들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천장이나 벽에 통기창을 두었습니다. 그건 언제나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물건이 썩는 일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각설탕에도 바로 그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실험해 보십시오. 틀림없을 테니까요.'

'그래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 설탕을 가지고 3개월의 항해를 마치고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머지 다른 설탕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이미 녹아 형태도 없어진 채 빈 포장지만 남아 있었다.

'자, 보십시오. 기존의 포장지로 된 각설탕은 모두 녹아 버렸지만, 구멍을 낸 포장지로 쓴 각설탕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사장은 책상 위에 늘어놓은 존의 실험용 설탕들을 살펴보았다.

사장은 곧 실험을 하도록 회사 간부들에게 지시했고, 존은 그 길로 특허청을 찾아 출원 절차를 마쳤다. 마침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설탕 회사의 실험은 존의 성공적인 실험으로 끝났다.



만화로 보는 발명·특허 이야기 출원·특허등록 하는 방법 ⑦

특허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감수/오해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

자, 이번엔 특허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알아보겠다

심사는 중요한 만큼 내용도 까다로우니 잘 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말은...
귀머개 벗고!!

특허심사는
방식심사→공개→실체심사
→등록공고→이의신청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의신청
등록공고
실체심사
공개
방식심사

그럼, 첫번째 「방식심사」는 출원서류를 출원의 주제,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다리가 기둥이 된다. 잘못하면...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의 허점이 있을 때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허점을 유효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처분을 한다.

치유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처분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허점을 유효할 수 없다.

보정!!
치유할 수 없는 무효처분

두번째는 「공개」인데 출원 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할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 기술내용의 공개공보를 발간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공개
출원
특허심사
등록공고
이의신청
실체심사
방식심사

※ 실용신안 심사는 무심사제도임

출원공개와 효과는 보상금 발생(단, 무단 실시자에게 사전 경고를 하여야 함)한다는 것이다.

이 양반이 남의 허가 없이 사용했어!
전, 죄송합니다... 모르고...
보상금 청구 하겠소~!

세번째 「실체심사」 심사결과 특허결정서나 특허거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송달한다.

특허결정
특허심사
등록공고
이의신청
실체심사
방식심사

네번째 「등록공고」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표한다.

오늘부터 이 친구를 특허로 인정합니다

다섯번째 「이의신청」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라도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내가 너 친구의 비리를 알았소.

위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흐름도」를 보자구나!

출원 → 1년6개월경과 → 공개

출원인 → 심사청구 → 심사 → 출원인

이의신청 → 특허결정 → 특허등록 → 등록공고 → 등록허소결정 / 등록유지결정

특허심사
특허결정
특허등록
등록공고
등록허소결정
등록유지결정

응, 역시 「심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알았어요!

불견...
그래서 전 꼭 「심사관」이 될거예요!
「미스코리아 심사관!!」
꼭 되자